

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 운영이사회 정관

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 운영이사회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

노인요양시설인 '노인요양원 살롬하우스'(이하 '살롬하우스'라 한다)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, 시설의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이끌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

본 회는 '노인요양원 살롬하우스 운영이사회'(이하 '이사회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

- ① 이 시설의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계곡촌길 23(장외리)이다.
- ② 이사회 사무소는 살롬하우스 안에 둔다.

제 2 장 임원

제 4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살롬하우스는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.

1. 이사장 1 명
2. 이사 5 명 (이사장 포함)
3. 감사 2 명

제 5 조 (임원 선임)

살롬하우스의 임원은 '기독교대한감리회 장외교회'(이하 '장외교회'라 한다) 기획위원회에서 추천하고, 당회에서 선출한다.

제 6 조 (임원선임의 제한)

- ① 이사회의 임원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'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'가 이사 현원 수의 2분의 1 을 넘을 수 없다.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'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'가 아니어야 한다.

제 7 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이사장의 임기는 5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임원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장외교회 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, 당해년도 당회에서 인준받는다.
- ⑤ 임원의 유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는 2 개월 내에 보선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8 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-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 19 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임원이 될 수 없다.

사회복지사업법 제 19 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- 1) 미성년자
- 1 의 2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1 의 3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1 의 4)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1 의 5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 의 6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1 의 7) 제 1 호의 5 및 제 1 호의 6 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「아동복지법」 제 71 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40 조부터 제 42 조까지 또는 「형법」 제 28 장·제 40 장(제 360 조는 제외한다)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나.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다.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1 의 8) 제 1 호의 5 부터 제 1 호의 7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 2 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2 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) 제 22 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 의 2) 제 26 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(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 의 3) 제 40 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2 의 4) 제 40 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3)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

- ② 이사회 임원이 제 1 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제 9 조 (임원의 해임)

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① 법령, 이사회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
-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외교회나 살롬하우스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
- ③ 직무태만,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- ④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제 10 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,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- ③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1. 살롬하우스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- 2. 제 1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장외교회 기획위원회 및 당회에 보고하는 일
 - 3.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- 4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11 조 (대표권의 제한)

이사회에 이사장이외의 이사는 살롬하우스를 대표하지 않는다.

제 12 조 (임원의 대우)

이사회에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3 조 (겸직금지)

- ① 이사는 살롬하우스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이사, 살롬하우스의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 3 장 이사회

제 14 조 (이사회 구성)

- ① 살롬하우스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-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. 단, 이사회의 정관변경은 장외교회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- ③ 임원의 유고시 보선에 관한 사항. 단, 보선된 결과를 장외교회 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회에 인준받아야 한다.
- ④ 사업계획, 실적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⑤ 시설 및 시설재산의 취득, 대출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⑥ 살롬하우스 시설장의 임면과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(인사위원회)
- ⑦ 살롬하우스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(징계위원회)
- ⑧ 살롬하우스의 이용자 수가 조절 및 직원의 급여 등, 운영에 관한 사항
- ⑨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- ⑩ 그 밖의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제 16 조 (이사회 의 소집 등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 월과 7 월 중에 2 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또는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의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 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이사회 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기본재산의 처분, 취득, 교환, 대출, 정관변경의 경우는 재적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18 조 (의결제척사유)

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1.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

제 19 조 (이사회 회의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, 인감 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살롬하우스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보칙

제 20 조 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,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제 21 조 (운영규정)

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살롬하우스의 조직과 직원의 배치는 『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』 제 22 조 제 1 항에 의하되, 직원의 운용과 인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으로 정한다.

살롬하우스 직원의 근무형태 및 시간과 보수에 대한 사항을 보수규정으로 정한다.

제 22 조 (규정의 제정과 개정)

① 살롬하우스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제 1 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살롬하우스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